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 외 2인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. . .

발 의 자: 김정도·김영태·장세구 의원(3인)

찬 성 자: 강승수·김민성·김영길·소진혁
이명희·이상호·이정희·이지연
장미경·추은희·허민근 의원
(11인)

1. 제안이유

기존 경로당의 노후화, 공간협소 등으로 이용의 불편이 발생되지만 경로당의 신축, 증개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므로 공동주택 매입을 통해 경로당을 이전 혹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함.

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축의 정의 재설정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호)

나. 매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4항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47조
- 2)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4조
- 3)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

나. 부서검토: 어르신복지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어르신복지과 비용추계서 제출(붙임)

라. 기 타: 신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축조하는 것을 말한다”를 “축조하거나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신규 경로당 설치 등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각 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매입할 수 있다.

1. 30년 이상 2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연면적 33㎡ 이하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경우
2. 수혜가구(65세 이상)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7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최소 이용정원의 이상일 경우
3. 입주민 서면 동의 2/3이상을 받은 1층에 위치한 세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신축”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(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새로 건축물을 <u>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9. (생 략)</p> <p>제5조(지원조건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 <u>축조하거나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신규 경로당 설치 등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조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각 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매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30년 이상 2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연면적 33㎡ 이하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경우</u></p> <p><u>2. 수혜가구(65세 이상)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</u></p>

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최소
이용정원의 이상일 경우
3. 입주민 서면 동의 2/3이상을
받은 1층에 위치한 세대

관계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(생략)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~ 4. (생략)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
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
4. ~ 6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□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26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)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어르신복지과

조 례 명	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47조▪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4조▪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축의 정의 재설정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호)○ 매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4항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내 경로당 시설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 불편이 있어도 증·개축 대상이 되지 않아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○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매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봄○ 단, 여가선용을 위한 환경적 여건 조성은 공감하나 공동주택 매입시 재정 부담 급증으로 향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,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매입 경로당의 안전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: 노후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경로당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○ 소요예산: 매입 및 리모델링비 200,000천원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	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2조제2호: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 등에 따른 세출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연평균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경로당 2개소 추진시 전제
- 경로당 기능보강사업(주민숙원) 도비보조금 지원(사업비의 50%) 전제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○ 매 입 비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○ 리모델링비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합 계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	
도 비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시 비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
합 계	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
※ 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(주민숙원) 보조금(사업비의 50%) 신청하여 도비 적극 확보

5. 부대의견: 해당사항 없음

6. 작성자: 어르신복지과 노인정책팀 황의열(☎054-480-5152)